2016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TRAVEL SAFETY GUIDEBOOK

Contents

STEP 1 안전한 여행준비

여행지 선택

▶ 여행경보제도 06
▶ 해외질병정보 26

짐싸기

▶ 여권발급 안내 30
▶ 무사증(VISA) 협정 체결국 현황 32
▶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34

여행일정 등록

▶ 여행사전등록제 '동행' 36

©LINE

STEP 2 안전한 여행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40
▶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 46

영사서비스

▶ 영사조력범위 58
▶ 영사콜센터 60
▶ 신속해외송금제도 60
▶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62

대사관 및 총영사관 연락처

▶ 재외공관 연락처 63
▶ 겸임국 현황 70

STEP 2 안전한 귀국

귀국시 발생 가능 사건사고 대응 요령

▶ 마약 운반 및 소지 연루 피해 74

여행후 질병 관리

▶ 일반 국민 행동 수칙 77
▶ 임산부 행동수칙 78
▶ 의심환자 안내문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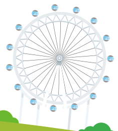

STEP 1

안전한 여행준비

여행전

여행지 선택	• 여행경보제도 • 해외질병정보
짐싸기	• 여권발급 안내 • 무사증(VISA) 협정 체결국 현황 •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여행일정 등록	• 여행자사전등록제 '동행'

©LINE

01 여행지 선택

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제도란?]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여행경보제도 질문과 답

Q 여행경보단계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A 여행경보단계는 해당 국가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보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험수준에 따라 지정하게 됩니다. 객관적 자료들과 주요 선진국들이 지정한 여행경보단계, 우리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상황 및 피해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지정합니다.

Q 여행경보단계가 지정된 국가나 지역으로 여행을 하면 안 되나요?

A 흑색경보가 지정된 국가는 여행금지국이며 여행금지국을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상 금지됩니다. 남색경보, 황색경보, 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색경보 발령지역은 위험지역이니 여행목적으로 방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여행하기 안전하다는 건가요?

A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치안상태나 위해요소가 적어 여행경보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예기치 않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외에서는 항상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욱이 그 지역의 위험상황에 맞게 안전대책을 강화해서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행동요령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해외체류자: 신변안전유의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
– 해외체류자: 신변안전특별유의
– 해외여행 예정자: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3단계 적색경보 (철수권고)
– 해외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 해외여행 예정자: 가급적 여행 취소 · 연기

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
– 해외체류자: 즉시 대피 · 철수
– 해외여행 예정자: 여행금지
※ 여행금지지정국가는 방문 및 체류 금지 국가입니다. (여권법 제17조)
※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6조)

특별여행경보제도

[특별여행경보제도란?] 여행자들에 대한 중 · 장기적인 안전여행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여행경보제도"와는 달리 "특별여행경보"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2013. 8월부터 시행)

특별여행경보 단계

특별여행주의보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남색 · 황색 경보인 경우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 · 연기)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별여행경보
기존 여행경보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발령 요건 해당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단기적 위기상황에 발령하며 "특별여행경보" 발령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조정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발령 기간 일주일 단위로 발령되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 됩니다.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방문하셔서 최신 여행경보단계와 특별여행경보 발령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 발령 현황

(2016.10.21일 현재)

여행경보	대륙별		여행경보 지정국가 및 지역
제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55개국)	아시아 (12)	전체지역 발령국가	**싱가포르, 피지**
		일부지역 발령국가	**동티모르**(인도네시아 국경지역 제외 전 지역) **라오스**(루앙프라방州와 비엔티엔州 접경지역 일부(까시~푸쿤~씨엥응언~므앙난~까시 도로 구간을 둘러싼 지역) 싸이솜분州) **미얀마**(제외: 3단계 지정지역) **스리랑카**(제외: 2단계 지정지역) **인도**(제외: 2 · 3단계 지정지역) **인도네시아**(제외: 2단계 지정지역) **중국**(중 · 북한 국경지역: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캄보디아**(반떼이 민체이, 바탐방, 파일린, 뽀삿) **태국**(제외: 3단계 지정지역) **필리핀**(수빅시, 보라카이/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북미 중남미 (15)	전체지역 발령국가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일부지역 발령국가	**과테말라**(제외: 2단계 지정지역) **멕시코**(바하칼리포니아/소노라/시날로아/두랑고/코아후일라/베라크루즈 주, 오아하까주) **미국**(푸에르토리코 및 버진 아일랜드) **에콰도르**(제외: 2단계 지정지역) **온두라스**(바히아섬) **자메이카**(제외: 2단계 지정지역)

(2016.10.21일 현재)

여행경보	대륙별		여행경보 지정국가 및 지역
제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55개국)	북미 중남미 (15)	일부지역 발령국가	**콜롬비아**(수크레주/코르도바주/ 산탄데르주/보야카주(베네수엘라 국경지역 제외)/쿤디나마르카주/ 아마소나스주/ 산타마르타시/바랑키자시/보고타시/까르타헤나시/ 메데진시/마니살레스시/페레이라시/아르메니아시) **페루**(로레토 주) 마이나스 지역/(산 마르틴 주) 우아야가 지역/(우아누코 주) 우아카이밤바,우마리에스 지역/(쿠스코 주) 라 콘벤시온 지역/(후닌 주) 콘셉시온, 우안카요 지역/(우카얄리 주) 코로넬 포르티요 지역/리마주/ 리마, 카야오 특별구 지역
	유럽 (11)	전체지역 발령국가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스페인, 아르메니아**
		일부지역 발령국가	**러시아**(러시아 · 북한 접경지역: 블라디보스톡시, 핫산 군) **벨기에**(제외: 2단계 지정지역) **우즈베키스탄**(테르미즈 및 인접국 접경지역) **카자흐스탄**(악토베주) **타지키스탄**(제외: 3단계 지정지역) **터키**(제외:2 · 3단계 지정지역) **투르크메니스탄**(제외 : 레밥, 마리주의 아프간 접경지역 일부) **프랑스**(제외: 일드프랑스, 알프마리팀)
	아중동 (17)	전체지역 발령국가	**남아공, 모로코, 바레인,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요르단, 적도기니, 쿠웨이트, 탄자니아**
		일부지역 발령국가	**르완다**(제외: 2단계 지정지역) **모잠비크**(제외: 2단계 지정지역)

(2016.10.21일 현재)

여행경보	대륙별		여행경보 지정국가 및 지역
제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55개국)	아중동 (17)	일부지역 발령국가	**세네갈**(제외: 2단계지정지역) **에티오피아**(제외: 3단계 지정지역) **이란**(제외: 2 · 3단계 지정지역) **카메룬**(제외: 3단계 · 특별여행경보 지정지역) **코트디부아르**(아비장) **콩고**(제외: 브라자빌, 포인트누아)
제2단계 황색경보 여행유의 (55개국)	아시아 (11)	전체지역 발령국가	**네팔, 파푸아뉴기니**
		일부지역 발령국가	**동티모르**(인도네시아국경지역) **몰디브**(말레 수도섬, 아두섬) **방글라데시**(제외: 3단계 지정지역) **스리랑카**(북부, 동부주) **인도**(비하르/자르칸드/차티스가르/오릿싸/텔랑가나/ 안드레프라데시/시킴/메갈라야/아쌈/미조람/ 마니푸르/나가랜드/아루나잘프라데시) **인도네시아**(아체, 말루쿠, 중앙 슬라웨시, 서파푸아, 파푸아) **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 **캄보디아**(프레아 비히아, 욷더 민체이) **필리핀**(제외: 1 · 3 · 4단계 · 특별여행경보 지정지역)
	북미 중남미 (11)	전체지역 발령국가	**엘살바도르**
		일부지역 발령국가	**과테말라**(페텐/이사발/싸까빠/치키몰라/할라빠/ 후띠아빠/과테말라/산타로사/에스퀸틀라) **멕시코**(치와와/누에보레온/타마울리파스/미초아칸/ 게레로 주) **베네수엘라**(제외: 3단계 지정지역) **아이티**(Nord주/Nord-Est주)

(2016.10.21일 현재)

여행경보	대륙별		여행경보 지정국가 및 지역
제2단계 황색경보 여행유의 (55개국)	북미 중남미 (11)	일부지역 발령국가	**에콰도르**(수꿈비오스/까르치/에스메랄다스/마나비/끼또/레벤타도르 산 주변/퉁그라와산 주변, 과야낄) **온두라스**(제외: 1단계 지정지역) **자메이카**(킹스턴 포함 세인트앤드류 및 세인트캐서린 지역) **콜롬비아**(아틀란티코주/막달레나/세사르/볼리바르/리사랄다/칼다스/톨리마/우일라/카우카/나리뇨(뚜마코 및 국경 지역 제외)/카사나레/비차다/과이니아/바우페스/라과히라주*/세사르주*/비차다주*/과이니아주*(*는 베네수엘라 국경지역 제외) **파나마**(다리엔주) **페루**(산 마르틴 주) 토카체 지역/ (우아누코 주) 마라뇽, 레온시오 프라도 지역/ (우카얄리 주) 파드레 아바드 지역/ (후닌 주) 사티포 지역/ (우앙카벨리카 주) 타야카하 지역/ (아야쿠초 주) 라 마르, 우안타 지역
	유럽 (8)	일부지역 발령국가	**벨기에**(브뤼셀) **우크라이나**(제외: 3단계 지정지역) **조지아**(남(南)오세티아, 압하지아) **코소보**(제외: 3단계 지정지역) **키르기스스탄**(잘랄아바드, 오쉬, 바트켄 주) **터키**(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투르크메니스탄**(레밥, 마리주 아프간 접경지역 일부) **프랑스**파리 및 수도권지역(일드프랑스, 알프마리팀)
	아중동 (25)	전체지역 발령국가	**가봉, 기니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사우디아라비아, 우간다, 지부티**
		일부지역 발령국가	**나이지리아**(제외: 3단계 지정지역) **니제르**(수도 니아메) **레바논**(제외: 3단계 · 특별여행경보 지정지역)

(2016.10.21일 현재)

여행경보	대륙별		여행경보 지정국가 및 지역
제2단계 황색경보 여행유의 (55개국)	아중동 (25)	일부지역 발령국가	**르완다**(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접경지역(단,기세니,키부예,창구구 제외)) **모리타니**(누악쇼트, 누아디브) **모잠비크**(소팔라주) **부르키나파소**(제외: 3단계 지정지역) **세네갈**(까자망스 지역) **수단**(제외: 3단계 지정지역) **알제리**(제외: 3단계 지정지역) **에리트레아**(제외: 3단계 지정지역) **이란**(터키 · 이라크 국경지역(코르데스탄, 케르만샤 주 서부지역 포함),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국경지역) **이스라엘**(제외: 3단계 · 특별여행주의보 · 특별여행경보 지정지역) **이집트**(제외: 3단계 · 특별여행경보 지정지역) **케냐**(제외: 3단계 지정지역) **코트디부아르**(제외: 1 · 3단계 지정지역) **콩고민주공화국**(제외: 3단계 지정지역) **튀니지**(제외: 3단계 지정지역)
제3단계 적색경보 여행유의 (39개국)	아시아 (8)	전체지역 발령국가	**파키스탄**
		일부지역 발령국가	**말레이시아**(사바주 동부도서 지역 및 동부해안) **미얀마**(중국 · 라오스 · 태국 · 방글라데시 국경지역, (카친 주) 파칸, (만달레이 주) 모곡 **방글라데시**(남동부 치타공 힐 트랙스(카그라차리, 랑가마티, 반다르반)지역 **인도**(잠무 카슈미르 주) **일본**(후쿠시마 원전주변 반경 30km지역 및 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거주제한구역/귀환곤란구역)

(2016.10.21일 현재)

여행경보	대륙별		여행경보 지정국가 및 지역
제3단계 적색경보 여행유의 (39개국)	아시아 (8)	일부지역 발령국가	**태국**(송크흘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파타니, 나라티왓, 얄라 주) **필리핀**(팔라완섬 푸에르토프린세사시 이남지역)
	북미 중남미 (3)	일부지역 발령국가	**베네수엘라**(술리아, 타치라, 메리다, 발렌시아 주) **아이티**(제외: 2단계 지정지역) **콜롬비아**(베네수엘라, 에콰도르및 파나마 국경지역, 라구아하라(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안티오키아/아라우카/바예 델 카우카(깔리 시 제외)/나리뇨(뚜마코 및 에콰도르 국경 지역)/푸투마요/메타/카케타/구아비아레/초코/노르테 데 산탄데르)
	유럽 (6)	일부지역 발령국가	**러시아**(북카프카즈 지역: 다게스탄/체첸/잉구세티아/세베로오세티아/카바르디노발카르/까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아디게야) **아제르바이잔**(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인근 7개 지역) **우크라이나**(크림 및 돈바스 지역(도네츠크, 루간스크)) **코소보**(미트로비차)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터키**(킬리스/가지안테프/산리우르파/마르딘/시르낙/하카리/반/비트리스/시르트/바트만/디야르바커/빙골/툰셀리/엘라지/시리아의 국경 10km이내 지역(하타이))
	아중동 (22)	전체지역 발령국가	**라이베리아, 말리, 부룬디, 시에라리온, 차드**

(2016.10.21일 현재)

여행경보	대륙별		여행경보 지정국가 및 지역
제3단계 적색경보 여행유의 (39개국)	아중동 (22)	일부지역 발령국가	**나이지리아**(니제르델타 부근 8개주(에도/아남브라/델타/이모/아비아/바이엘사/리버스/아콰이봄)아다마와/보르노/요베/바우치/카노/카두나/플래토/나사라와/아부자 주) **니제르**(제외: 니아메 지역) **레바논**(리타니강 이남/12개 팔레스타인 난민촌/베카 북부지역/북부 국경 10km이내/베이루트/베이루트 남부 교외지역(Ghobeiry,Chiayah,Haret Hraik, Borj al Brajne, Laylake) 트리폴리 시/시돈 시/베이루트) **모리타니**(제외: 2단계 지정지역) **부르키나파소**(소움주, 오달란주, 세노주, 야텡가주) **수단**(다르푸르 지역 3개주, 남코르도판주, 블루나일주, 화이트나일주(코스티 이남)) **알제리**(카빌리 지역 6개주 산악지역(부메르데스/티지 우주/베자이아/지젤/부아라/보르즈부아레리즈), 튀니지 국경지역(테베사,엘웨드 동부,오아글라 동부), 리비아 국경지역(일리지 동부), 니제르 · 말리 · 모리타니아 국경지역(타만라셋 남부,아드라르 남서부,틴두프 남서부))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 · 수단 · 지부티 국경지역) **에티오피아**(아파르, 소말리 지역) **이란**(시스탄발루체스탄주) **이스라엘**(가자지구 및 가자지구 인근 5km 이내 지역) **이집트**(Sharm El-Sheikh를 제외한 시나이 반도 전역 및 이집트-리비아 국경지역 전역(국경도시 Salloum을 포함, 국경지역으로부터 100km까지)

01 여행지 선택
02 검색기
03 여행일정등록

(2016.10.21일 현재)

여행경보	대륙별		여행경보 지정국가 및 지역
제3단계 적색경보 여행유의 (39개국)	아중동 (22)	일부지역 발령국가	**카메룬**(노르드주, 아다모와주) **케냐**(동부 해안가로부터 100km 이내 모든 지역, 나이로비 중부 이스트레이, 가리사, 만데라, 와지르, 리보이) **코트디부아르**(라이베리아 · 기니와 국경을 접한 4개주(뎅겔레,바핑,디쥐트몽타뉴,무아앵카발리)) **콩고민주공화국**(이투리주, 오트우엘레주, 북키부주, 남키부주, 탕가니카주, 북부지역(오트카탕가주, 오트로마미주, 루알라바주) **튀니지**(알제리 접경지역(젠두바주/까세린주 샴비산 일대), (리비아 접경지역) 크사르 길레인 이남 사막지역 전역)
제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 (7개국)	아시아 (2)	전체지역 발령국가	**아프가니스탄**
		일부지역 발령국가	**필리핀**(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바실란, 술루, 타위-타위 군도)
	아중동 (5)	전체지역 발령국가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특별여행 주의보		일부지역 발령국가	**이스라엘**(West Bank, 가자지구 외곽 10km지점까지)
특별여행 경보		전체지역 발령국가	**기니,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일부지역 발령국가	**레바논**(트리폴리, 아르살, 페르멜 지역, 베카지역-브리텔 이북, 바알베크포함 레바논산맥 이동 지역), **이스라엘**(가자지구), **이집트**(시나이 반도지역), **필리핀**(민다나오지역(잠보앙가,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제외한 전지역))

대륙별 여행경보 발령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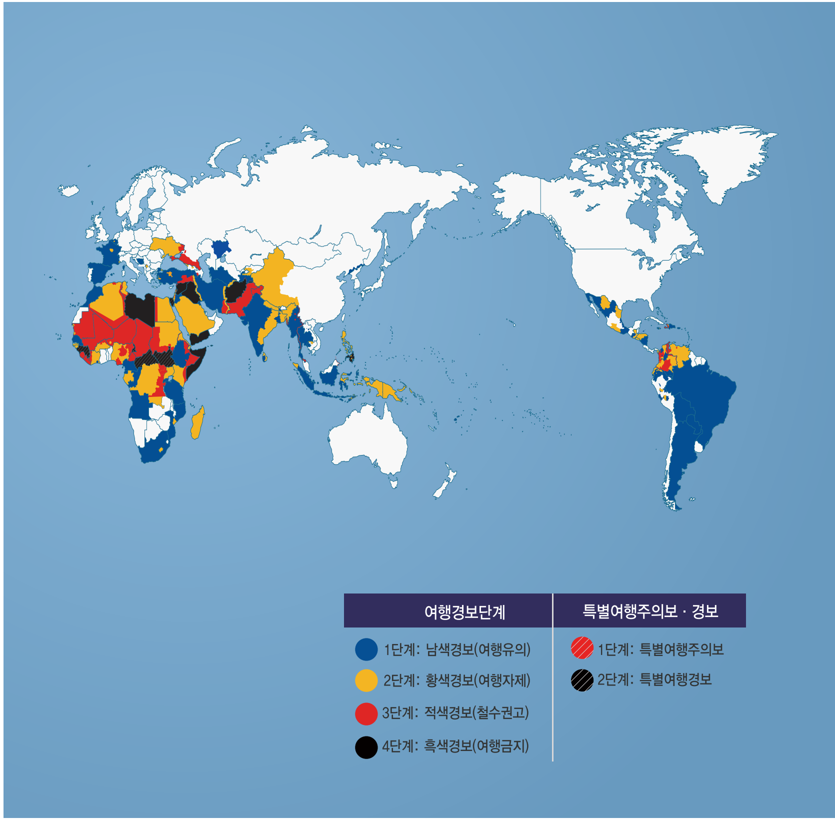

국가별 여행경보발령 단계 · 아시아

(2016.10.21일 현재)

발령국가

●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특별여행주의보 특별여행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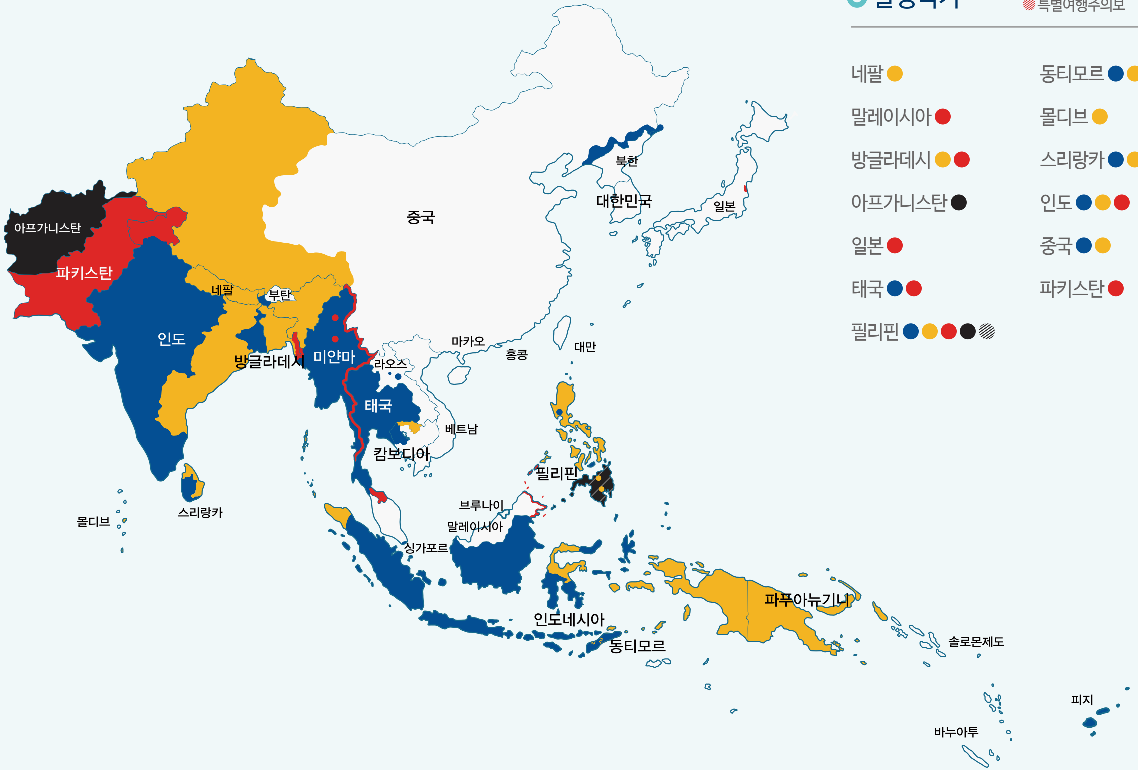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국가별 여행경보발령 단계 • 북미중남미

(2016.10.21일 현재)

발령국가

🔵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특별여행주의보 특별여행경보

과테말라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멕시코 🔵🟡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셀바도르 🟡	온두라스 🔵🟡
자메이카 🔵🟡	콜롬비아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

푸에르토리코(미국령), 버진아일랜드(미국령) 🔵

국가별 여행경보발령 단계 • 유럽 · 러시아 CIS 지역

(2016.10.21일 현재)

발령국가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특별여행경보

러시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자키스탄
프랑스
벨기에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코소보
터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가별 여행경보발령 단계 • 아중동

(2016.10.2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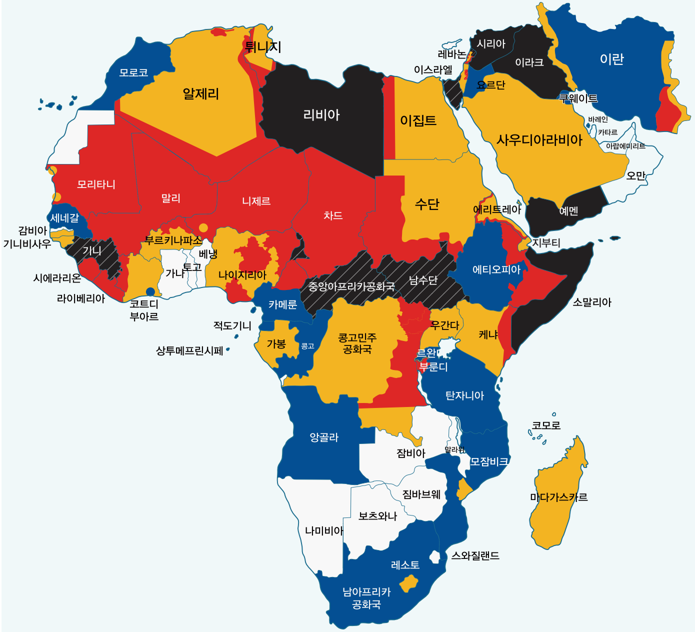

발령국가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특별여행경보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모잠비크	바레인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예멘	요르단
우간다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탄자니아	튀니지	

01 여행지 선택
02 짐싸기
03 여행일정등록

해외질병정보

지카바이러스감염증(Zika virus)

감염 경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고, 사람간 일상적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으며, 드물게 수혈 또는 성접촉으로 감염 가능성 있음 (잠복기: 2~14일)

증상 발열, 발진,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

예방
- 모기물림 회피, 외출 시 긴 소매, 긴바지 착용으로 노출 부위 최소화
-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은 환자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

주요 발생 지역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에서 발생국 확인

모기 회피방법

모기 기피제
- 기피성분으로DEET, Icaridin(=picaridin), eucalyptus oil(PMD), IR3535, indalone, dimethyl phthalate, dimethyl carbate, ethyl hexanediol citronella oil 등이 함유된 스프레이 또는 바르는 모기 기피제 준비해 주세요.
-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엷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금지해 주세요.

에어로졸 살충제
- 주로 피레스로이드(pyreth-roid) 성분이 함유된 에어로졸 제품을 준비해 주세요.
- 숙소 내에 모기가 침입하였을 경우 사용하며 모기를 향하여 직접 분사해 주세요.

안전한 숙소 꾸미기
- 문과 창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만일 방충망이 없을 때는 반드시 잠자리 둘레에 모기장을 사용(모기장에 구멍난 곳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 주세요.
- 방충망에 살충제(퍼머스린(permethrin), 델타메스린(deltamethrin) 등)를 처리할 경우 효과적입니다.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감염 경로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음. 사우디아라비아 내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단봉낙타 접촉 및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가 보고됨.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등 호흡기증상

예방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 접촉 회피, 호흡기 증상 있을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낙타 또는 낙타유와 접촉 삼가, 기저질환 있을 시 중동지역 여행 자제

주요 발생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라비안반도 및 인근 국가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감염 경로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에 감염된 동물 또는 환자의 혈액, 체액, 성 접촉 등 직접 접촉으로 감염 (잠복기: 2~21일)

증상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허약감과 갑작스런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 동반되고 때로 체내·외 출혈

예방 동물 또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예방약 없음)

주요 발생 지역 서아프리카(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및 아프리카

동물(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vian Influenza, H5N1, H7N9)

감염 경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가금류, 철새 등)와 접촉 또는 조류의 배설 및 분비물에 접촉(잠복기 : 7일(3~10일))

증상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예방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 및 접촉 회피, 고기(닭, 오리)는 익혀서 먹기, 개인위생 철저

주요 발생 지역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및 이집트 등

뎅기열(Dengue Fever)

감염 경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생기며, 사람간 전파 없음

증상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 (종종 쇼크, 출혈로 사망)

예방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함(예방약 없음)

※모기장, 곤충기피제, 보호복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 착용

주요 발생 지역 남태평양, 카리브해,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부분 열대 국가 (도시지역 발생)

예방접종

황열 황열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은 약 10일이며, 1회 접종으로 10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황열 유행지역을 여행한다면 출발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콜레라 예방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충분하며,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와 추가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경구용과 주사용 백신이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은 전신 부작용이 없고 약 70%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의 경우 5년간, 주사용 백신은 3년간 유효합니다.

일본뇌염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소아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초회 접종인 경우 1주일 간격으로 2회 피하주사하며, 1년 뒤 1회 접종합니다. 추가접종은 6세, 12세에 합니다. 여행 10일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광견병 시골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과 접촉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1달 이상 장기간의 여행을 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어깨근육에 3회 접종합니다.

B형간염 65세 이상의 노인, 심장질환,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 등이 접종대상이 되며 매년 1회씩 접종 받아야 합니다.

말라리아 예방약 말라리아 유행지역을 가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1~2주 전에 예방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예방약을 복용하여도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여행 중이나 귀국 후 2달 이내에 열이 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02 짐싸기

여권발급안내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불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 (여권법 제2조)

여권의 쓰임새

- 사증(VISA) 신청 및 출입국 심사,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탑승
- 여행자 수표 지불 및 도난 · 분실 시 제시
-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 병역의무자의 병무신고 및 귀국신고시
- 환전, 해외여행 중 은행 이용 등

여권 발급 비용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 공관	국내	재외 공관	국내	재외 공관
복수여권(거주여권 포함)	5년초과 10년이내	4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4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8세이상	4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4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5년 8세미만	4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4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4면)	24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여권발급 제한유의

외국에서 위법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 여권법 제 12조 제 3항 제 2호에 의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을 수도 있음)

신청장소

외교부장관이 대행지정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대행기관(239개) 및 재외공관(172개)

구비서류

일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유효여권(재발급 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 시), 기타 병역 관계 서류 추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여권발급동의서(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참조

여권상의 영문성명 작성/변경

-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을 표기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권장 (예: 요셉->JOSEPH(X), YOSEP(O))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 (예:GILDONG, GIL-DONG)
- 최종 여권상 표기된 영문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도록 규정
- 가족간 영문 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 구성원의 영문 성을 확인하여 일치시키는 것을 권장

사진규정

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머리(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는 3.2~3.6cm

●사진바탕은 흰색의 무배경이며 사진상 그림자가 없어야 함 ●귀 부분은 노출시키고 악세서리(모자, 머플러 등)는 착용하지 않도록 함 ●제복 착용은 군인,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신청 시에만 허용되며,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에 한하여 허용됨 (단, 얼굴 전체 노출)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됨

무사증(VISA) 협정 체결국 현황

국가/지역별 무사증 체류기간(일반여권 소지자)

(2016. 3월 기준)

적용대상	국 가 명
아주 (13개국)	**뉴질랜드**(90일/협정), **대만**(90일/상호주의), **라오스**(15일/일방적 면제), **말레이시아**(90일/협정), **마카오**(90일/상호주의), **몽골**(30일/일방적 면제, 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일방적 면제), **브루나이**(30일/상호주의), **싱가포르**(90일/협정), **인도네시아**(30일/일방적 면제), **일본**(90일/상호주의), **태국**(90일/협정), **필리핀**(30일/일방적 면제), **홍콩**(90일/상호주의)
미주 (32개국)	**가이아나**(90일/상호주의), **과테말라**(90일/협정), **그레나다**(90일/협정), **니카라과**(90일/협정), **도미니카**(공)(90일/협정), **도미니카**(연)(90일/협정), **미국**(90일/상호주의), **멕시코**(90일/협정), **바베이도스**(90일/협정), **바하마**(90일/협정), **베네수엘라**(90일/협정), **브라질**(90일/협정), **세인트루시아**(90일/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90일/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90일/협정), **수리남**(90일/협정), **아르헨티나**(90일/상호주의), **아이티**(90일/협정), **우루과이**(90일/협정), **안티구아바부다**(90일/협정), **에콰도르**(90일/상호주의), **엘살바도르**(90일/협정), **온두라스**(90일/상호주의), **자메이카**(90일/협정), **칠레**(90일/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90일/협정), **콜롬비아**(90일/협정), **캐나다**(6개월/상호주의), **코스타리카**(90일/협정), **파라과이**(30일/상호주의), **파나마**(90일/협정), **페루**(90일/협정)
유럽 (48개국)	쉥겐협약 가입국(26개국)
	그리스(90일/협정), **네덜란드***(90일/협정), **노르웨이**(180일 중 90일/협정), **덴마크**(180일 중 90일/협정), **독일**(90일/협정), **라트비아***(90일/협정), **리투아니아**(90일/협정), **리히텐슈타인***(90일/협정), **룩셈부르크***(90일/협정), **몰타**(90일/협정), **벨기에**(90일/협정), **스웨덴**(180일 중 90일/협정), **스위스***(90일/협정), **스페인***(90일/협정), **슬로바키아***(90일/협정), **슬로베니아***(90일/상호주의), **아이슬랜드**(180일 중 90일/협정), **이탈리아***(90일/협정 및 상호주의), **에스토니아**(180일 중 90일/협정), **오스트리아**(90일/협정), **체코**(90일/협정), **포르투갈**(60일/협정), **프랑스***(90일/협정), **폴란드**(90일/협정), **핀란드**(180일 중 90일/협정), **헝가리**(90일/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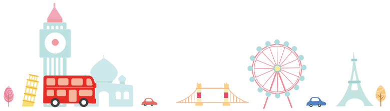

적용대상	국 가 명
유럽 (48개국)	[비쉥겐국]
	러시아(60일, 180일 중 누적 90일), **루마니아**(90일/협정), **마케도니아**(1년 중 누적 90일/일방적 면제), **모나코**(90일/상호주의), **몬테네그로**(90일/상호주의), **몰도바**(180일 중 90일, 일방적 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90일/상호주의), **불가리아**(90일/협정), **세르비아**(90일/상호주의), **사이프러스**(90일/상호주의), **산마리노**(90일/상호주의), **아일랜드**(90일/협정), **우크라이나**(90일/일방적 면제), **안도라**(90일/상호주의), **알바니아**(90일/상호주의), **영국***(최대 6개월/협정 및 일방적 면제), **조지아**(360일/일방적 면제), **크로아티아**(90일/상호주의), **키르기즈**(60일/일방적 면제), **코소보**(90일/일방적 면제), **터키**(90일/협정), **카자흐스탄**(30일/협정)
대양주 (12개)	**괌**(45일/VWP 90일/상호주의), **마이크로네시아**(30일/상호주의), **마샬군도**(30일/상호주의), **바누아투**(1년내 120일/일방적 면제), **북마리아나연방**(45일/VWP 90일/상호주의), **사모아**(60일/상호주의), **솔로몬군도**(1년내 90일/상호주의), **키리바시**(30일/상호주의), **투발루**(30일/상호주의), **통가**(30일/상호주의), **피지**(4개월/상호주의), **팔라우**(30일/상호주의)
아프리카 · 중동지역 (13개)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상호주의), **라이베리아**(90일/협정), **레소토**(60일/협정), **모리셔스**(16일/상호주의), **모로코**(90일/협정), **보츠와나**(90일/일방적 면제), **세이쉘**(30일/상호주의), **스와질란드**(60일/상호주의), **아랍에미리트**(30일/상호주의), **이스라엘**(90일/협정), **오만**(30일/상호주의), **튀니지**(30일/협정), **카타르**(30일/상호주의)

※ 미국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필요 /캐나다: 출국전 전자여행허가(ETA)신청 필요.
※ 괌, 북마리아나연방(수도 : 사이판) : 45일간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며,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쉥겐국 중 네덜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는 26개 쉥겐국 합산, 최종 출국일 기준 이전 180일 이내 90일 체류 가능 (쉥겐협약 우선 적용)
※ 영국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90일이나 영국은 우리 국민에게 최대 6개월 무사증입국 허용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필요(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안내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발성 • 인화성 • 유독성 물질

객실 ☒ 위탁 수하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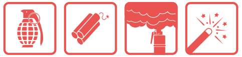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방사성 • 전염성 • 독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객실 ☒ 위탁 수하물 ◯

창 • 도검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스포츠용품류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공구류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 날길이 6㎝를 초과하는 가위 • 스크루드라이버 • 드릴 심류 / 총길이 10㎝를 초과하는 렌치 • 스패너 • 펜치류 / 가축몰이 봉 등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이하)만 위탁가능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 ◯ 위탁 수하물 ◯

생활도구류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 • 욕실용품 •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이하로 1인당 2Kg (2ℓ)까지 반입 가능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 분무 • 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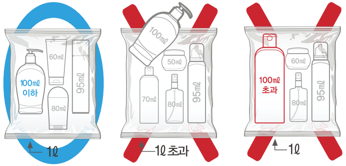

물 • 음료 • 식품 • 화장품 등 액체 • 분무(스프레이) •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 요원에게 제시

※ 출처 : 인천국제공항

03 여행일정등록

여행자 사전등록제 '동행'

안전한 여행을 위해 지금 '동행'하세요!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지킴이 **'동행'**

01 여행자사전등록제 '동행'은?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 자신의 여행 정보를 여행 전에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02 필수 등록정보

1. 기본 인적사항(실명인증 필요, 성명, 비상연락처)
2. 여행일정(날짜, 체류도시 등)
3. 로밍 휴대폰 번호, 숙소 등 현지 비상연락처

03 등록 혜택

1. 동행에 여행일정을 등록하면 이메일로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습니다.
2. 여행지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소재 파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행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국내의 가족에게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 할 수 있음

04 등록방법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방문 (www.0404.go.kr)

❶ 동행서비스 클릭 ❷ 동행가입 클릭 ❸ 여행일정등록/확인

앱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STEP 1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을 검색~
안드로이드폰은 Play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STEP 2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 어플을 다운받는다.

STEP 2

안전한 여행

여행중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영사서비스	• 영사조력범위 • 영사콜센터 • 신속해외송금제도 • 여권 재발급(분실시)
대사관 및 총영사관 연락처	• 재외공관 연락처 • 겸임국 현황

©LINE

01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국외 테러 피해 예방

이제 세계 어느 지역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 지난 2개월간 발생한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테러('15.11.13 파리, '16.1.12 이스탄불, 1.14 자카르타 테러 등)는 중동에서 유럽, 동남아로 확산되고 hard target(국가기관, 공공시설 및 군, 경, 공무원)뿐 아니라 soft target(다중이용시설 및 불특정 다수 민간인)을 목표로 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테러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위급 상황시 연락

현지 우리공관 및 국내 영사콜센터

82-2-3210-0404

예방 해외체류 또는 여행시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아래 사항을 숙지사항

▶ 먼저 국가별 여행경보단계(www.0404.go.kr)를 확인하시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 대도시 또는 유명 관광지의 다중이용장소(쇼핑몰, 유명 외국계 프랜차이즈 매장, 공항 및 기차역 등)는 테러의 목표로 선호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
- 야간 통행, 심야 식당 및 술집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
- 특정 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는 경우 신속히 그 곳을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의 맞춤형 로밍 문자메세지를 포함하여 우리 정부와 우리공관의 안전정보 안내를 확인, 준수
- 현지 정부의 지침과 언론 동향도 수시로 확인

국외 테러사고 대응요령

[테러/폭발이 일어났을 때]

호흡을 멈추고 현장을 이탈하세요!

화약테러 및 생물테러 시 코와 입을 손수건 등으로 가린 후 신속히 장소를 이탈합니다. 폭발 시에는 바닥에 엎드려 손으로 신체를 보호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1 **화약테러**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중지한 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신속히 현장을 이탈합니다.
증상 - 눈물과 경련, 피부의 화끈거림,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 등의 증상과 주변 동물의 죽음, 나무 고사 현상이 발생합니다.

2 **생물테러** 만약 인근에 의심물질이 누출된 경우, 신속히 현장에서 대피하되 손수건 등을 여러 겹으로 접어서 코와 입을 가린 채 물과 비누로 노출된 피부를 조심스럽게 씻은 후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노출된 부위에서 특이 증상이 발생하는 지 살펴봐야 합니다.
증상 - 병원균 또는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테러로 호흡기, 피부에 난 상처, 음식물 복용 등을 통해 감염되고 전염병을 발생시키며 고열, 구토, 복통, 설사, 콧물, 인후염, 피부발진, 피부염, 안구출혈, 무기력 등의 증상이 잠복기간을 거친 후 나타납니다.

3 **방사능 테러** 방사능 테러는 특수 장비가 없다면 방사능 물질로 인한 오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핵폭발 발생 지역에 있는 경우, 즉시 엄폐물(두꺼울수록 방사능 노출을 감소)을 찾아 몸을 숨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TV•라디오 또는 인터넷을 통해 관계당국의 공식 발표내용을 파악하고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4 **폭발** 양팔과 팔꿈치를 갈비뼈에 붙이고 바닥에 엎드려 폐, 심장, 가슴 등을 보호하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덮어 목 뒷덜미, 귀, 두개골을 보호합니다. 2차 폭발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절대 섣불리 일어나서는 안되며 폭발물에 손을 대지 말고 이동할 때는 낮게 엎드린 자세로 폭발지점 반대 방향이나 비상구로 이동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1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 폭발 취약 지역에 방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목적지 국가를 검색하시고 여행경보 단계 지정현황과 국가별 안전정보를 확인하세요.

[인질/납치를 당했을 때]

외지고 위험한 지역의 출입은 삼가세요!

여행 전 치안 위험지역을 미리 확인하시고 혼자 밤길이나 외진 지역을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1 납치범을 자극하지 마세요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녹음을 요청할 때는 순순히 응하세요.

2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섣불리 대적하지 마세요. 다른 인질들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3 휴대폰을 켜둡니다

위치추적이 가능하여 구출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4 눈이 가려질 시

주변의 소리, 냄새, 범인의 억양, 이동 시 도로상태 등을 최대한 기억해 둡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1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미리 확인하세요

인질 및 납치가 빈번한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종 사건사고 대응 요령

[체포 · 구금당했을때]

현지 사법당국에 우리나라 공관에 연락해 줄것을 요청하세요!

체포 및 구금을 당했을 때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을 요청하시고 조사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함부로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재외공관에 연락하세요

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발효되지 않아 수사를 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현지인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영사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2 함부로 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조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서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고, 먼저 통역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3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활용하세요

변호사 선임, 보석, 소송비용 등을 지불하기 위해 긴급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활용하세요.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1 외국인도 현지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외국인도 현지법과 절차에 따라 현지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정절차로 부터 면제되거나 특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모든 국민은 영사와 면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사와 면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금, 체포시 공관 영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

3 우리 공관은 변호사나 통역사를 직접 알선해 드릴 수 없습니다

공관에서 통역 및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시 선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난 · 분실을 당했을때]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옷에 이물질을 묻히거나, 동전을 떨어뜨리거나, 길을 묻거나, 돈을 구걸하는 등 주의를 끄는 행동은 소매치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재외공관을 찾아가세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경찰 신고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권 분실시에는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 분실 증명서를 만들고, 공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여(사진, 여권번호 등)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세요.

2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세요

지갑을 분실해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세요.(p. 60 참고)

3 여행 전 여권 복사본 및 여권사진을 준비하세요

여권을 미리 복사해 두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분실시 유용합니다. 또한 여권사진을 챙겨가시면 여권 재발급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출발 전 미리 준비하세요.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1 여권이나 귀중품은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귀중품은 호텔 프런트, 객실 내의 금고에 보관하거나 크로스백에 넣어 앞으로 매세요. 백팩이나 숄더백은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여행경비는 필요한 만큼만 분산해서 보관하세요

되도록 현금은 적게 소지하시고, 지갑, 주머니, 가방 등에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낯선 이들을 경계하세요

옷에 이물질을 묻히거나 길을 묻는 등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경계하세요. 호텔이나 숙소에서도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문을 꼭 잠그세요.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사고 후 진술서 및 사진을 남겨두세요!

사고 현장을 발견한 목격자가 있을 시 진술서를 확보해 두시고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두세요.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는 자제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의사소통이 문제될 때

재외공관에 연락하시면 통역사를 선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영사콜센터에 전화하시면 긴급상황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822-3210-0404 유료, +800-2100-0404 무료)

2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는 금물

사고후 지나친 저자세나 사과를 할 때에는 모든것이 자신의 과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진술서와 증거를 확보하세요

현지 경찰에 연락하시고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세요.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 촬영하세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모바일앱에서는 현지 경찰서 및 구급차 번호를 안내하고 있으니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두세요.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1 재외공관에서는 가족의 현지 방문을 도와드립니다

사안이 위급하여 국내 가족이 현지로 와야만 하는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가족의 긴급 여권이나 비자 관련 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2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세요

의료비나 소송비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할 때에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

해외여행 중, 도난 분실 등으로 일시적인 궁핍한 상황에 놓였을 때, 국내의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현지의 재외공관에서 현지화로 여행객에게 여행경비를 전달하는 제도(p. 60 참조) 입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호기심에 시위현장에 접근하지 마세요!

여행 전 미리 시위빈발 국가를 확인하시고 시위현장 목격 시 접근하지 마시고 바깥 외출을 자제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1 군중이 몰린 곳에 무턱대고 접근하지 마세요

시위현장에는 폭력, 총기난사 등 여러 위험요소가 있으니 호기심에 접근하지 마세요.

2 시위현장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게 조심하세요

시위 현장에서 특정 시위대를 대표하는 색상의 옷을 입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가능한 빨리 철수하세요

시위가 고조되어 무력충돌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시위지역에서 가능한 빨리 철수하세요.

4 재외공관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세요

당장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해 현재 자신의 소재와 긴급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비상시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1 여행할 나라의 치안 정세를 미리 파악합니다

시위도 여행의 위험요소들 중 하나이니 여행 전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치안 정세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귀국이 필요할 시 재외공관이 도와드립니다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비자발급 등 원활한 출국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몸을 바닥에 엎드리고 상황을 파악한 뒤 바로 비상구로 대피합니다. 해일이 발생하면 가능한 높은 층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지진 발생시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신체를 가리고 엎드린 후, 주변에 고정된 물체를 붙잡아 몸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좁은 길, 담 근처, 벽, 문 기둥, 자판기 근처는 위험하므로 주의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사용은 위험합니다.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구로 대피합니다.

2 해일 발생시

가능한 건물의 높은 층으로(지붕이 안전) 이동합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급경사가 없고 지형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목조 주택은 떠내려 갈 가능성이 있으니 벽돌이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합니다.

3 태풍·호우 발생 시

천둥·번개가 칠 때는 우산을 쓰지 말고 큰 나무 밑을 피하여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저지대 및 계곡에서 즉시 대피하고 가로등·고압선·전기맨홀에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자연재해 발생 시 라디오, TV,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행동하시고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우리 공관에서는 자연재해 및 고립 시 필요한 식량 및 구호품을 제공하거나 귀국지원을 위한 항공편 및 여권분실 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사망한 경우]

사망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재외공관에 신고하세요!

여행 동행인은 사망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고 재외공관에 신고하세요. 사망자의 가족은 영사를 통해 긴급 여권, 도착 비자 등 가족 방문과 관련된 사항 및 장례 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사망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세요

해외여행중 여행동행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경찰서에서는 검사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재외공관에 신고하세요

사망 시 재외공관에 사망자의 인적 사항 및 사고경위 등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역 :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장소 및 유해 안치장소, 사망원인, 사망자의 한국주소, 본적, 유족의 성명과 주소, 사망자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 등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1 우리 공관이 지원하는 영사서비스

1. 국내가족의 현지 방문 지원

- 출국을 위한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발급을 지원
- 현지에서 상황 설명, 현지 경찰 등 관계 당국과 면담을 주선

2. 장례 관련 절차 지원

- 관할 경찰서에 시신 인수 관련 협조 요청
- 현지 장례 및 화장 등 시신처리 대행업체 소개
- 납골 단지 또는 시신의 이송 관련 수속 및 절차 지원
- 사망 관련 서류에 대한 신속한 공증

3. 의료기관 정보 제공

02 영사서비스

영사조력범위

영사조력범위가 무엇인가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업무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와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는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나 범죄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지원하면서 국가간 조약과 해당국가의 법률 등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제공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시고, 해외여행 시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사는 이런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사건·사고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 증명서 발행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간,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 및 가해사건 연루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협조 요청
- 국내 연고자들과의 연락 및 필요시 긴급여권 발급 지원
- 긴급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영사는 이런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시간대 (ex. 심야, 새벽, 휴일 등)에 무리한 일반 민원 영사서비스 제공 요구
-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 지불(의료비, 변호사비 등)
-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등)
-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사법권 행사
- 병원과 의료비 교섭
- 사건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 수형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해당 국가에 압력 행사
-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한 연락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01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02 영사서비스

03 대사관 및 총영사관 연락처

영사콜센터

• 영사콜센터는 해외 사건 · 사고 관련 사항은 물론 여권, 해외이주, 영사확인 등 각종 영사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02-3210-0404

해외(유료) +822-3210-0404

해외(무료) +800-2100-0404

상담분야

• 해외 재난 대응 및 해당 지역 안전정보 제공
• 해외 사건 · 사고 접수 및 조력
• 신속해외송금 지원
• 해외 긴급상황 시 통역서비스(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지원
• 여권, 영사확인 등 외교부 관련 민원상담

신속해외송금제도

[신속해외송금제도란?]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영사콜센터 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해외송금 지원 절차]

① 신속해외송금 지원 신청 : 현지 대사관(영사관) 방문하거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신청

② 외교부 계좌 입금 : 신청자의 국내 연고자가 우리은행 · 농협 · 수협에 신청금액 입금

③ 긴급경비 전달 : 현지 공관은 영사콜센터를 통해 입금 확인후 긴급경비 지원

※ 신청 접수는 영사콜센터를 통해 24시간 가능, 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근무시간 중 방문수령

[지원제외 대상] 마약, 도박, 자금세탁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의 송금이 의심되는 경우나 상업적 목적의 송금지원, 정기적 송금 요청

[지원 한도] 1회 미화 3천 달러 한도

※ 재외공관의 외화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

통역서비스 지원

[통역서비스]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 · 사고나 긴급상황시 현지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6개국어(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러시아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범위] 긴급상황시 현지 공무원 또는 관계자(경찰 · 세관 · 출입국 심사관 · 병원관계자 · 소방관 등)와의 통화

[지원 가능 사례] 출입국 · 세관 심사, 병원 응급 상황, 경찰서 분실물 신고 등

[지원 방식 : 3자 통화] 영사콜센터 통역 상담사가 수신한 민원인 전화를 통영상담사-민원인-현지인과 3자 통화하는 형식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1 여권분실시,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 분실 증명서 발급받습니다.

2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 여권번호, 여권 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단,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 · 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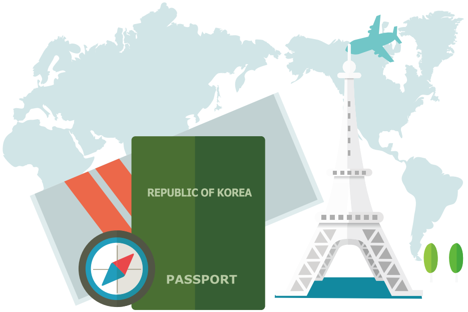

03 대사관 및 총영사관 연락처

재외공관 연락처

국가명	대사관,총영사관 등	대표연락처	긴급연락처
가나	주가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베냉, 토고)	(233-0) 302-776-157	(233) 244-321-858
가봉	주가봉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상투메프린시페, 적도기니)	(00241) 0173-4000	(00241) 0750-7822
과테말라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02) 2382 - 4051	(502) 5561-9956
그리스	주그리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30) 210-698-4080	(30) 694-611-7098
나이지리아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234-0) 9-461-2701	(234) 80-9998-1726
	주라고스대한민국분관	(234-1) 271-6295	(234) 80-2290-5494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마다가스카르,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27-0) 12-460-2508	(27) 072-136-7615
네덜란드	주네덜란드왕국대한민국대사관	(31) 70-740-0200	(31) 65-396-2364
네팔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977-1) 427-7391	98510-33178
노르웨이	주노르웨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아이슬란드)	(47) 2254-7090	(47) 9713-8790
뉴질랜드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사모아, 쿡제도, 통가)	(64) 4-473-9073	(64) 21-0269-3271
	주오클랜드대한민국분관	(64) 9-379-0818	(64) 27-646-0404
니카라과	주니카라과대한민국대사관	(505) 2267-6777	505-8238-9371
대만	주타이뻬이대한민국대표부	(886)-2-2758-8320	(886) 912-069-230
덴마크	주덴마크왕국대한민국대사관	(45) 39-46-04-00	(45) 25-21-74-61
도미니카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도미니카연방,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1809) 482-6505	1809-383-9091
독일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49-0) 30-260-650	0173-407-6943
	주본대한민국분관	(49-0) 228-943-790	(49-0) 170-337-9105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490-0) 69-956-7520	(49-0) 173-363-4854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	(49) 40-650-677-600	(49) 1703401498
동티모르	주동티모르대한민국대사관	(670) 332-1635	(670) 7701-2170
라오스	주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856-21-352-031	856-20-5839-0080

국가명	대사관,총영사관 등	대표연락처	긴급연락처
러시아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아르메니아)	(7-495) 783-2727	(7-495) 778-0780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7) 423-240-2222	(7) 914-072-8347
	주상트페테르부르그대한민국총영사관	(7) 812-448-1909	(7) 905-255-5496
	주유즈노사할린스크대한민국출장소	(7) 4242-462-430	(7) 984-132-7043
	주이르쿠츠크대한민국총영사관	(7-3952) 250-301	(7) 964-650-9404
레바논	주레바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시리아)	(961) 5-922-846	(961) 71-411-552
루마니아	주루마니아대한민국대사관	(40-0) 21-230-7198	(40) 723-540-233
르완다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부룬디)	(250) 252-577-577	(250) 788-380-806
리비아	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216-71) 274-759	(216) 22-575-924
말레이시아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603) 4251-2336	(6017) 623-8343
멕시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52) 55-5202-9866	(52-1) 55-1391-4778
모로코	주모로코왕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모리타니)	(212-537) 75-1767	(212) 661-16-4851
모잠비크	주모잠비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258) 21-495-625	(258) 84-518-1272
몽골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976) 7007-1020	(976) 9911-4119
미국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바하마)	(1) 202-939-5600	(1) 202-641-8742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1) 646-674-6000	(1) 718-530-5007
	주댈러스대한민국출장소	(1) 972-701-0180	(1) 713-259-9257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1) 213-385-9300	(1) 213-700-1147
	주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1) 617-641-2830	(1) 617-264-0404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1) 415-921-2251	(1) 415-652-7593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	(1) 206-441-1011	(1) 206-920-4979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1) 312-822-9485	(1) 312-371-6316
	주애틀랜타대한민국총영사관	(1) 404-522-1611	(1) 404-295-2807
	주앵커리지 대한민국 출장소	(1) 907-339-7955	(1) 907-360-1550
	주하갓냐 대한민국 출장소	(1) 671-647-6488	(1) 671-688-5810
	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관	(1) 808-595-6109	(1-808) 265-9349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713-961-0186	281-814-9455
미얀마	주미얀마연방대한민국대사관	(95) 1-527142	(95) 9-4211-58030
바레인	주바레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	(973) 1753-1120	(973) 3883-3233

국가명	대사관,총영사관 등	대표연락처	긴급연락처
방글라데시	주방글라데시대한민국대사관	(8802) 5881-2088	(880) 17-5563-9618
베네수엘라	주베네수엘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가이아나, 수리남)	(58-212) 954-1270	(58) 0414-241-0056
베트남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84) 4-3831-5110	(84) 90-402-6126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84) 8-3824-2639	(84) 8-93-850-0238
벨기에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룩셈부르크)	(32-0) 2-675-5777	(32-0) 476-45-75-06
벨라루스	주벨라루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375-17) 306-0147	(375-29) 369-1320
볼리비아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591) 2-211-0361	(591) 7673-3334
불가리아	주불가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359) 2-971-2181	(359) 888-917-445
브라질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5) 61-3321-2500	(55) 61-99658-2421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	(55) 11-3141-1278	(55) 11-99658-4731
브루나이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673) 233-0248	(673) 729-1336
사우디 아라비아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966-11-488-2211	966-50-080-1065
	주젯다대한민국총영사관	(966) 12-668-1990	(966) 53-587-7682
세네갈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카보베르데)	(221) 33-824-06-72	(221) 77-333-4295
세르비아	주세르비아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몬테네그로)	(381) 11-3674-225	(381) 63-214-565
수단	주수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에리트레아)	(249) 1-8358-0031	(249) 9-1215-0103
스리랑카	주스리랑카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몰디브)	(94) 0-11-2699036	(94) 0-777364431
스웨덴	주스웨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라트비아)	(46-8) 5458-9400	(46-0) 73-330-1616
스위스	주스위스연방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리히텐슈타인)	(41-0) 31-356-2444	41(0) 79-339-5812
스페인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안도라)	(34) 91-353-2000	(34) 648-924-695
	주라스팔마스대한민국분관	(34) 928-230-499	(34) 629-155-134
슬로바키아	주슬로바키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421(0) 2-3307-0711	421(0) 904-934-053
싱가포르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65) 6256-1188	(65) 9654-3528
아랍에미리트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한민국대사관	971-2-441-1520	(971) 50-613-5722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971-4-3449200	(971) 50-553-2816

국가명	대사관,총영사관 등	대표연락처	긴급연락처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	(54-11) 4802-8865	(54-911) 3572-0307
아일랜드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353(0) 1-660-8800	353(0) 87-234-9226
아제르바이잔	주아제르바이잔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994-12-596-7901	(994-51) 877-9607
아프가니스탄	주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대사관	(93) 20-210-2481	(93) 70-735-6492
알제리	주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213(0) 21-54-65-55	213(0) 770-11-44-00
앙골라	주앙골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나미비아)	(244) 222-006-067	(244) 938-880-573
에콰도르	주에콰도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93(2) 290-9227	(593) 999-182-679
에티오피아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지부티)	(251-11) 3-72-81-11	(251) 93-001-0933
엘살바도르	주엘살바도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벨리즈)	(503) 2263-9145	(503) 7318-1450
영국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44) 20-7227-5500	(44) 78-7650-6895
예멘	주예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967-1-431-801	(967) 735-671-615
오만	주오만왕국대한민국대사관	(968) 2469-1490	(968) 9944-2892
오스트리아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슬로베니아)	(43-1) 478-1991	(43) 664-527-0743
온두라스	주온두라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04) 2235-5561	(504) 9815-5251
요르단	주요르단왕국대한민국대사관	(962-6) 593-0745	(962) 79-560-0316
우간다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남수단)	(256) 414-500-197	(256) 774-478-376
우루과이	주우루과이동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98) 2628-9374	(598) 94-111-593
우즈베키스탄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998) 71-252-3151	(998) 91-192-1595
우크라이나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몰도바)	(380-44) 246-3759	38(050)-437-1606
이라크	주이라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964-0) 77-0725-2006	(964-0) 770-040-5883
	주아르빌대한민국연락사무소	(964-750)790-1678	(964-750)445-6098
이란	주이란이슬람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98) 21-8805-4900	(98) 21-8805-4900
이스라엘	주이스라엘국대한민국대사관	(972) 9-951-0318	(972) 8839479
이집트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20) 2-3761-1234	20(0) 12-8333-3236
이탈리아	주이탈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몰타, 산마리노)	(39) 06-802461	(39) 3351850383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	(00)39-02-2906-2641	(00)39-331-9557463
인도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부탄)	91(0)99 5359-6008	91(0)99-5359-6008

국가명	대사관,총영사관 등	대표연락처	긴급연락처
인도	주뭄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91-22) 6147-7000	(91) 98336-00184
	주첸나이대한민국총영사관	(91) 44-4061-5500	(91) 97-8982-3270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62) 21-2967-2580	(62) 811-852-446
일본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81) 90-1693-5773	(81) 90-4544-6602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	(81) 78-221-4853	090-3289-4853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052) 586-9221	(81-90) 8153-6588
	주니가타대한민국총영사관	(025) 255-5555	(81) 90-8873-8853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	81-11-218-0288	(81-80) 1971-0288
	주센다이대한민국총영사관	(81) 22-221-2751	(81) 90-7932-4755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81-0) 6-6213-1401	090-3050-0746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	(81) 045-621-4531	(81) 080-6731-3285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092) 771-0461	080-1776-3653
	주히로시마대한민국총영사관	082-568-0502	090-8712-8028
자메이카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	(1-876) 924-2731	(1-876) 287-3828
적도기니	주적도기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말라보본관	(240) 333-090-775	(240) 555-791-803
조지아	주트빌리시분관	(995-32) 297-03-18	(995) 599-24-99-39
중국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86-10) 8531-0700	(86)-139-1101-9526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86) 20-2919-2999	(86) 139-2247-3457
	주다롄대한민국출장소	(86-411) 8235-6288	(86) 158-4085-1230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86-021) 6295-5000	(86) 136-8199-6951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86) 24-2385-3388	(86) 138-0400-6338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	(029) 8835-1001	187-1055-9721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86) 27-8556-1085	(86) 159-2624-1112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	(86) 28-8616-5800	139-8095-6348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86) 532-8897-6001	(86) 136-0898-9617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852) 2529-4141	(852) 9731-0092
짐바브웨	주짐바브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말라위, 잠비아)	(263-4) 756-541	(263) 772-781-430
체코	주체코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420) 234-090-411	(420) 725-352-420
칠레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6-2) 2228-4214	(56) 9-7430-4546
카메룬	주카메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237) 222-203-756	(237) 6-9766-9001
카자흐스탄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7-7172) 790-490	7705-757-9922
	주알마티대한민국분관	(7) 727-291-0490	(7) 777-705-6634
카타르	주카타르국대한민국대사관	(974) 4483-2238	(974) 5582-8295

국가명	대사관,총영사관 등	대표연락처	긴급연락처
캄보디아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023) 211-900	(092) 555-235
캐나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613) 244-5010	613-244-5082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ICAO 대사관)	(1) 514-845-2555	(1) 514-298-3008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1) 604-681-9581	(1) 604-313-0911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1) 416-920-3809	(1) 416-994-4490
케냐	주케냐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모리셔스, 세이셸, 소말리아, 코모로)	(254) 20-361-5000	254-708-984-891
코스타리카	주코스타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06) 2220-3160	(506) 8730-4365
코트디부아르	주코트디부아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니제르, 레소토, 부르키나파소)	(225) 2248-6701	(225) 0870-4689
콜롬비아	주콜롬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7) 1-616-7200	(57) 321-976-3511
콩고민주 공화국	주콩고민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콩고)	(243-15) 03-5001	(243-99) 017-7568
쿠웨이트	주쿠웨이트대한민국대사관	(965) 2537-8621	(965) 9784-5998
크로아티아	주크로아티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85-0) 1-4821-282	(385-0) 91-2200-325
키르기즈	주키르기즈대한민국대사관	(996) 312-579-771	(996) 550-031-122
타지키스탄	주타지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992-44) 600-2114	(992) 93-532-0803
탄자니아	주탄자니아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255-22-211-6086	(255) 754-360-931
태국	주타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	(66) 2-247-7537	(66) 81-914-5803
터키	주터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90) 312-468-4821	(90) 533-203-6535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90) 212-368-8368	(90) 534-053-3849
투르크 메니스탄	주투르크메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	(993) 12-94-72-86	(993) 6585-7173
튀니지	주튀니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216) 71-799-905	(216) 99-567-040
트리니다 드토바고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1868) 622-9081	(1868) 316-5672
파나마	주파나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07-264-8203	(507) 6673-5309
파라과이	주파라과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95) 21-605-401	(595) 991-709-353
파키스탄	주파키스탄회교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92-51) 227-9380	(92) 301-854-6944
	주카라치대한민국분관	(92-21) 3585-3950	(92) 333-228-4368
파푸아뉴기니	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675) 321-5822	(675) 7261-2292

국가명	대사관,총영사관 등	대표연락처	긴급연락처
페루	주페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1-1) 632-5000	(51)998-787-454
포르투갈	주포르투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351) 21-793-7200	(351) 91-079-5055
폴란드	주폴란드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리투아니아)	(48) 22-559-29-00	(48) 601-32-8893
프랑스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모나코)	33(0)1-4753-6995	33(0)6-8028-5396
피지	주피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투발루)	(679) 330-0977	679-992-1086
핀란드	주핀란드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에스토니아)	(358-9) 251-5000	(358) 40-903-1013
필리핀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겸임공관 (팔라우)	(63-2) 856-9210	(63) 917-817-5703
	주필리핀공화국세부분관	63-32-231-1516	(63) 917-808-3907
헝가리	주헝가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36) 1-462-3080	(36) 30-982-9463
호주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	(61-2) 6270-4100	(61) 0-408-815-922
	주멜번대한민국분관	(61-3) 9533-3800	(61) 418-435-915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61(0)2-9210-0234	61(0)421-525-446

겸임국 현황

국가명	대사관&총영사관	겸임국가
가나	주가나대한민국대사관	베냉
		토고
가봉	주가봉대한민국대사관	상투메프린시페
		적도기니
그리스	주그리스대한민국대사관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알바니아
나이지리아	주나이지리아대한민국대사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마다가스카르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노르웨이	주노르웨이대한민국대사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사무아
		쿡제도
		통가
도미니카공화국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도미니카연방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러시아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아르메니아
르완다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부룬디
모로코	주모로코대한민국대사관	모리타니
미국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바하마
베네수엘라	주베네수엘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가이아나
		수리남
벨기에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	룩셈부르크
세네갈	주세네갈대한민국대사관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카보베르데
세르비아	주세르비아대한민국대사관	몬테네그로
수단	주수단대한민국대사관	에리트레아
스리랑카	주스리랑카대한민국대사관	몰디브
스웨덴	주스웨덴대한민국대사관	라트비아
스위스	주스위스대한민국대사관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안도라
앙골라	주앙골라대한민국대사관	나미비아

국가명	대사관&총영사관	겸임국가
에티오피아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관	지부티
엘살바도르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벨리즈
오스트리아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슬로베니아
우간다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	남수단
우크라이나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몰도바
이탈리아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몰타
		산마리노
인도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부탄
짐바브웨	주짐바브웨대한민국대사관	말라위
		잠비아
카메룬	주카메룬대한민국대사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케냐	주케냐대한민국대사관	모리셔스
		세이셸
		소말리아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주코트디부아르대한민국대사관	니제르
		레소토
		부르키나파소
콩고민주공화국	주콩고민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콩고
크로아티아	주크로아티아대한민국대사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한민국대사관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파푸아뉴기니	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대사관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폴란드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	리투아니아
프랑스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모나코
피지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투발루
핀란드	주핀란드대한민국대사관	에스토니아
필리핀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팔라우

STEP 3
안전한 귀국

여행후

- 귀국시 발생 가능 사건사고 대응 요령
- 여행후 질병 관리

©LINE

01 귀국시 발생 가능 사건사고 대응 요령

[마약소지를 피하려면]

마약 운반 및 소지 연루 피해

공항에서 낯선 사람의 요청은 거절하세요!

낯선 사람이 짐을 맡길 시에는 단호히 거절하시고 수하물에 마약을 은닉할 수 있으니 자신의 수하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1 낯선 사람의 물건 전달은 거절하세요

공항에서 긴급한 용무로 탑승이 어렵다며 국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줄 선물전달을 요청하는 수법은 마약 밀수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마약취약국가 여행 시 조심하세요

중국이나 태국, 필리핀 등 마약취약국가를 여행할 시 마약과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전 세계적으로 마약관련 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특정량 이상의 마약 판매, 운반, 소지 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중국 형법 제347조)

※ 만약 귀하가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약 운반으로 간주하고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약 운반 등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우리 공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1 수하물이 단단하게 잠겼는지 확인하세요

자신도 모르게 마약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2 낯선 사람과 도보나 하이킹을 통해 국경을 넘지 마세요

3 복용 약이 있을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세요

마약 사범으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의사 처방전을 받고 이를 소지하세요.

4 낯선 사람의 선물은 받지 마세요

특히 아이들의 장난감 등을 통해 마약이 운반될 수 있습니다.

02 여행후 질병관리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꼭 제출하세요.

• 귀국 시 발열,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신고하세요

※ 2016년 8월 4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자가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국 후, 잠복하고 있던 질병이 발병할 수 있어요 .

• 위험지역 여행 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간 방문 전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질병은 귀국 후 12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일부 질병(말라리아 등)은 6~12개월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음

• 귀국 후 1개월 간 헌혈 금지,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을 여행한 남성의 경우 귀국 후 최소 2개월 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여행 경험을 미리 말하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질병정보는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 에서 확인

주의 여행 후 지카바이러스 주의사항

01 일반국민행동수칙

● 귀국한 뒤 2주 이내 의심증상(발진과 함께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증상 중 하나가 동반된 경우)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발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 귀국 후 1개월 간 헌혈을 금지해 주세요.

● 귀국 후 1개월간은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 성접촉에 의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권고안입니다.('16.2.19)
  * 새로운 근거가 확인되면 변경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고

* 공통사항 : 지카바이러스 환자와 그의 성 파트너는 지카바이러스가 성접촉에 의해 전파될 위험성과 그 예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
* 가임여성 :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가임여성은 귀국 후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할 것을 권고
* 남성 :
  - 성 파트너가 임신상태인 경우
    • 임신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성 파트너가 임신상태가 아닌 경우
  -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단, 확진된 경우 회복 후 6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02 임산부 행동수칙

[여행 전 준비사항]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최신 발생국가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travelinfo.cdc.go.kr)에서 지속 업데이트 중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인 경우 연기를 고려해 주세요.
- 여행을 연기할 수 없을 경우 여행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시 일반적 주의사항을 상담받고 태아의 건강상태 체크해 주세요.
- 모기 퇴치 제품(모기 기피제) 및 밝은 색의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준비해 주세요.

[여행 중 주의사항]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 야외 외출시에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
- 모기는 어두운 색에 더 많이 유인되므로 활동 시 가능한 밝은 색 옷을 착용해 주세요.
-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엷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 일반적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는 임신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전 주의사항 확인 필요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해 주세요.

[여행 후 주의사항]

- 귀국한 뒤 2주 이내 의심증상(발진과 함께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증상 중 하나가 동반된 경우)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해 주세요.
  * 발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해 주세요.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 권고

03 의심환자 안내문

[수혈 및 성전파 예방]

- 귀국 후 1달간 헌혈을 금지해 주세요.
  - * 단, 확진환자는 치료종료 후 6개월 동안 채혈 금지
- 가임 여성은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해주세요.
- 남성은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 * 단, 확진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콘돔 사용

※ 성전파 예방 권고안은 새로운 근거가 확인되면 변경 예정임.

[회복 및 치료]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대부분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주일 이내 회복됩니다.
- 발열 또는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아스피린과 소염진통제(NSAID)의 경우 뎅기열이 아님을 확인한 후 복용해 주세요.
- 확진 검사는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뢰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보건소에서 통보할 것 입니다.

[격리 관련]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일상적인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확진되더라도 격리치료는 불필요합니다.
-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택에서 평소와 같이 생활하시고 직장에서 업무를 보셔도 됩니다.
- 다만 모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기 활동 시기에는 증상이 나타나고 1주일 동안 모기에 물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